

강사 및 외부전문가 수당 등 지급기준에 관한 지침

제정	2022. 2. 18.
개정	2022. 5. 6.
개정	2022. 11. 10.
개정	2023. 8. 28.
개정	2025. 1. 21.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한국도평방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직원 교육 등의 강사, 업무와 관련한 이사회, 세미나, 토론회 및 각종 회의 등에 참여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강사료와 사례금은 별도의 지급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강사료”는 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교육 및 연수에 섭외된 강사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전을 말한다.
2. “사례금”은 이사회, 채용전형, 각종 위원회 회의 및 세미나·토론회 등의 참석자 및 자문 활동을 시행한 외부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전을 말한다. <개정 2022.5.6.>

제4조(지급기준) ① 강사료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② 사례금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당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준을 초과 및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 임원(위원장 및 상임임원) 및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5조(지급절차 및 지급방법) ①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수당은 세법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며, 지급근거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징수 및 작성하여 사유발생일 이후 지급한다.

1. 수당 지급 명세서
2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3. 신분증 사본 등 증빙자료

②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수당의 지급방법은 참석자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.

제6조(공직자등에 대한 상한액) 강사료와 사례금 지급대상이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직자등(이하 “공직자등”이라 한다)인 경우 강사료와 사례금 등의 총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(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)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7조(여비의 지급) 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「공무원여비규정」에 따라 실비수준으로 교통비, 숙박비 및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실비수준으로 지급하는 여비는 이 지침의 강사료 및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.

② 공직자 등이 아닌 대상에게 여비를 지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「공무원여비규정」을 준용하여 실비의 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속기관이나 위원회 이외의 기관에서 별도의 여비를 지급받는

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8조(지급배제) 지급대상 중 법령 등 타 규정에 의해 지급이 제한된 경우 그에 따른다.

제9조(보칙)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특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준용하여 위원장을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부 칙 <2022. 2. 18.>

(시행일) 이 규칙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2. 5. 6.>

(시행일) 이 규칙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2. 11. 10.>

(시행일) 이 규칙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3. 8. 28.>

(시행일) 이 규칙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5. 1. 21.>

(시행일) 이 규칙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강사료 지급기준 <개정 2022.11.10., 2023.8.28>

구분	지급기준	지급액 (만원)	지 급 대 상	
			공직자 등	민간전문가 등
특 (I)	1시간당	100 이내	◦ 국내외 해당분야 권위자로 위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	
특 (II)	최초1시간	40	◦ 전·현직 장관(급)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	◦ 사회적 명망이 높은 인물 및 이에 준하는 인사로 위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
	초과시간당	20		
일반 (I)	최초1시간	30	◦ 전·현직 차관(급) 이상 ◦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이에 준하는 자	◦ 특정 분야의 유명인사,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, 박사학위 취득 후 해 당 강의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인사로 위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
	초과시간당	15		
일반 (II)	최초1시간	25	◦ 전·현직 4급 이상 ◦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임원 및 이에 준하는 자	◦ 기업·기관·단체의 임원 중역, 기타 전문자격 증 취득 후 강의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인사로 위원장이 특별히 인 정하는 자
	초과시간당	12		
일반 (III)	최초1시간	20	◦ 전·현직 5급 이하 공무원 ◦ 기업·기관·단체의 부장급, 원어민 어학 강사, 강의분야 경력 3년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인사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	
	초과시간당	10		
보조 강사	<삭 제 2023.8.28.>			

- ※ 강의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인정
- ※ 강의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시간을 매 1시간 단위로 강의시간에 포함하며 1시간 미만 초과시간 중 초과시간이 30분 이상인 경우에만 1시간으로 인정
- ※ 같은 강사가 같은 과목을 2회 이상으로 나누어 연속적으로 강의하는 경우 별개의 강의로 봄
- ※ 세미나, 심포지엄,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 등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
- ※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
- ※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해당분야에 전문가로서 위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지급기준액의 50%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

[별표 2] 사례금 지급기준 <개정 2022.5.6., 2023.8.28., 2025.1.21.>

구분		금액	비고
이사회 운영(사전 안전심사수당 포함)		1회 300,000원	
특별위원회	제재위원회(회의참석)	1회 300,000원	
	제재위원회(결정문 작성료)	1회 500,000원	
	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(서류심사)	1회 50,000원	
	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(회의참석)	1회 300,000원	
자문위원회	선수위원회(회의참석 또는 대외활동)	1회 300,000원	회의 외 도핑방지 대외활동은 참석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, 100,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음. 단, 1일 2회 지급 제한
	<삭 제 2023.8.28.>		
	조사위원회(회의참석)		
기타 위원회 및 전문가그룹	인사위원회(회의참석)	1회 250,000원	참석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00,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음. 단, 1일 1회 지급 제한
	도핑검사관 운영위원회(회의참석)		
	계약 등 각종 평가위원회(회의참석)		
	자문단 및 외부전문가 자문 활동	1회 300,000원	
채용관련	서류전형 위원(회의참석) * 서류심사	1회 300,000원	참석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00,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음. 단, 1일 1회 지급 제한
	면접전형 위원(회의참석) * 면접심사		
	면접 응시자 수당	1회 20,000원	

※ 회의참석을 대신해 서면으로 회의를 진행할 경우의 사례금은 1회 100,000원을 지급한다.

※ ZOOM 등을 이용한 비대면 화상회의에 대한 사례금은 상기 기준을 적용한다.